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7. 7 선고 2020가단119583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김중확, 하승빈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래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7. 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00,000원 및 그 중 37,500,000원에 대하여 2021.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조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금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 4. 6.경 피고의 배우자(남편)인 소외 D과의 협의를 거쳐 피고로부터 '신시내티 밀라크론(미국), T-35' 1대(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매매대금 7,500만 원(부가세 제외)에 매수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 제1조 계약물품

##### 가) 장비 주요 사양

●메이커 및 장비모델 : 신시내티 밀라크론(미국), T-35

●장비년식 : 2002년

#### 제3조 물품 매매 금액 지급

가) 계약금 : 일금 삼천칠백오십만원(37,500,000원)을 2020. 4. 9. 지급한다.

나) 잔 금 : 일금 삼천칠백오십만원(37,500,000원)을 설치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급한다.

#### 제6조 물품성능

가) 매도인은 장비 설치시, 부품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장비가 정상 작동하지 못할 경우 매도인은 물품 정상가동에 따른 제반 비용을 매도인의 비용으로 하며, 정상가동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나) 장비 정상 작동후, 각축의 장비의 정도(Accuracy)요구 사항은 매수인과 장비설치업체와의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의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20. 4. 13.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3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전북 완주에 있는 소외 (주)E이라는 업체에 분해된 상태로 이 사건 장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2020. 4.경 원고의 공장으로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하였고, 원고는 2020. 6.경 소외 F(상호 G)에게 이 사건 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의뢰하였으며, 위 F이 그 무렵 이 사건 장비를 설치한 후 작동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장비에 연결된 가동 프로그램(시스템)의 부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20. 7. 31.경 위 F에게 장비설치비로 6,600,000원을 지급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8,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장비를 인도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 장비가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부팅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장비의 정상가동을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채무불이행(주위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 제공의무의 이행지체, 예비적으로 정상가동의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하여 가동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사건 장비를 제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계약금의 반환을,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장비의 설치를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지급을 구한다. 나아가 설령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작년도가 1997년인 이 사건 장비의 년식을 2002년으로 원고에게 고지하였는바, 원고는 사기 내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 가)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장비 설치시 부품의 손실, 훼손으로 인하여 장비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만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였다. 이 사건 장비는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장비를 분해하여 보관한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장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장비의 부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바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장비의 설치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설치경험이 없는 업체에 이 사건 장비의 설치를 맡김으로써 프로그램 조정 등의 문제로 이 사건 장비가 정상 작동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피고의 협조의무 불이행 내지 이행지체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동일 장비의 설치 경험이 있는 업체에서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장비 가동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장비설치책임을 부담하는 원고 측에서 먼저 이 사건 장비가 정상적으로 설치되더라도 가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지 않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 3. 판단

### 가. 피고의 채무불이행 여부

1) 먼저 원고의 이행지체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프로그램 제공의무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급부의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나, 이 사건 프로그램 급부의무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및 이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프로그램, 즉 ‘부팅 프로그램’은 이 사건 장비에 내재된 것으로 보이고 단지 그것이 다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은 설치된 이 사건 장비가 부팅되지 아니함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인 점, 따라서 이는 아래에서 볼 피고의 이 사건 장비에 대한 정상가동의무의 범위에 포섭되는 조치내용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별도의 독립된 급부의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와 별도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공이 주된 급부의무의 내용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원고의 불완전이행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추완 요구에 대한 상대방이 상당 기간 응하지 않거나 더 이상의 추완이 불가능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며, 채무의 내용에 좇은 채무이행이 있었는지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그 제품이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그 가치나 적합성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와 계약당사자들의 목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6, 7,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장비의 인도 및 설치에 있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이 사건 장비를 공급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이 사건 장비는 중고장비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분해된 상태로 보관 중이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과정에서 이 사건 장비가 실제 정상 작동되는지 여부를 검증하지 못한 원고 측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장비의 성능보장에 관한 이 사건 조항이 추가되었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계약서 작성의 경위에 더하여 ‘매도인은 장비 설치시, 부품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장비가 정상 작동하지 못할 경우 매도인은 물품 정상가동에 따른 제반 비용을 매도인의 비용으로 하며, 정상가동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비의 설치에 있어 정상가동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옳다.

②피고가 공급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장비는 정상적 작동이 가능하여야 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는 이 사건 장비의 설치에 있어 정상가동을 담보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치과정에서 이 사건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부품의 분실, 훼손’으로 인해 장비가동이 안될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해석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합리적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장비의 설치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과정에서 피고 측에서 원고 측에게 ‘동일장비를 설치한 경험이 있는 업체에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설치업체를 추천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상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의 설치업체로 반드시 피고가 추천한 업체를 지정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증인 H의 증언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설치비용의 부담주체는 설치책임의 귀속주체와 별도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조항은 설치비용의 부담과 무관하게 이 사건 장비의 설치에 있어 정상가동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장비의 설치과정에서 확인되는 작동 불능 등 장비가동의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에게 전가하기로 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도 아니다.

④이 사건 장비는 분해된 장비의 설치(조립) 이후 시스템 부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가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비의 설치(조립)와 시스템 부팅 사이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가동불능은 이 사건 장비 자체의 결함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원고가 지정한 업체의 설치 부주의 등 원고 측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만일 특정의 업체가 보유한 프로그램 등의 도구를 통하여만 이 사건 장비를 정상적으로 설치가동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설치경험의 유무 등 기술적 역량과는 평면을 달리하는 문제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명시적으로 고지하여 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였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⑤피고는 설치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조치 요구에 대하여 이 사건 장비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프로그램’의 확보를 통한 이 사건 장비의 시스템 부팅 시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원고 측에서 먼저 이 사건 장비를 정상적으로 설치하였다는 점을 밝히려는 취지로 다툼 뿐이다.

## 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

### 1) 계약 해제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장비의 공급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장비의 설치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원고 측의 추완요구에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2020. 12. 30.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 2)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장비의 계약금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장비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설치비용 6,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100,000원(= 37,500,000원 + 6,600,000원) 및 그 중 원상회복에 따른 반환대금 37,5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1.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위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는데,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다. 반면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 가산하는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장비의 인도 의무와 피고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위 인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인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의사표시의 당사자, 시기 등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 갑 제3호증의 1,2의 기재만으로 그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sup>1)</sup>.

판사 김태환

1)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관한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